##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3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이 용·강기윤·김정재

김예지 · 김용판 · 안병길

서정숙 · 김태흠 · 박덕흠

유의동 · 김도읍 · 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 회계 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체육회 정관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칫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지역체육회의 법적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비법인사단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에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로, "보 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대한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중 "체육회"를 각각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시·도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시·도체육회를 설립한다.
  - 1. 시·도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 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 4. 지역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8.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11.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시 · 도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시·도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 ⑤ 시 · 도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시·도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⑦ 시·도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⑧ 시·도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육회"를 각각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2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로 한다.

제43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통합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가대표선수"란 <u>통합체</u>	4의2 <u>대한체</u>
<u>육회</u>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u> </u>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	
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	
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	
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	
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9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u>통합체육회</u>	가 <u>대한체육회,</u>
<u>·대한장애인체육회</u> 및 그	시·도체육회, 대한장애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체육회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	
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 아. (생 략)

#### 10.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 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되고 <u>통합체육회</u> 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12. (생략)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 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 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 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 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

② <u>협의회의</u> 조직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나. ~ 아.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u>.</u>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체육회의 회장을 포
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
회의
<u> </u>

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통</u>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u>통합체육회</u>,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 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를 <u>보조할 수 있다</u>.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9. (생 략)

10. <u>통합체육회</u>, 대한장애인체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 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

	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
	슬)	
	②	대
	한체육회, 시·도체육회	
	<u>.</u>	
	③대한체육	회,
	시 • 도체육회	
	<u>보조한다</u> .	
저	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u>대한체육회, 시·도체육</u> 호	]_

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 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	제33조 <u>(대한체육회)</u> ①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	<u> 대한체육회</u> .
<u>다)</u> 를 설립한다.	
1. <u>체육회</u> 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1. <u>대한체육회</u>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	
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u>체육회</u> 는 제1항에 따른 목	② <u>대한체육회</u>
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u>대한체육회</u>
	<u></u>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④ <u>대한체육회</u>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	
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	⑤ <u>대한체육회</u>

-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u>체육회</u>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 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한다.
- ⑧ <u>체육회</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신 설>

<u>.</u>
⑥ <u>대한체육회</u>
,
⑦ <u>대한체육회</u>
<u>.</u>
⑧ 대한체육회
,

제33조의2(시·도체육회) ① 지역 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시·도체육회를 설립한다. 1. 시·도체육회에 가맹된 경기

- 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

   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와
   지원
-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 제 교류
-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 대회의 참가
- 4. 지역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위한 사업
-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 <u>발 및 보급</u>
-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

   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8.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 리·운영
-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등 문화사업
- 11.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체육회는 제1항에 따 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시 · 도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시·도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를 둘 수 있다.
- ⑤ 시 · 도체육회의 회원과 회 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 ⑥ 시 · 도체육회의 임원 중 회 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표로 선출하되,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다.
- ⑦ 시・도체육회는 제6항에 따 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여야 한다.
- ⑧ 시·도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자금 차입 등) <u>체육회, 장</u> 제40조(자금 차입 등) <u>대한체육</u>

아) (	인체로	<u>우회</u> , .	도핑	방지	위원	회	또
는	진흥	공단은	을 시	<del> </del> 업	목적-	을	달
성	하기	위하여	혀 3	필요	하면	문	화
체-	육관공	방부장	관의	승	인을	받	0}
자-	금을	차입(	국제	기관	, 외	국	정
부	또는	외국	인	등으	로부	터	차
입	하는	경우	를	포함	한다	)하	거
나	물자	를 도	입할	수	있다		

제41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u>체육회</u>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② <u>체육회에</u> 기부되거나 진흥 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 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 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 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회, 장애인체육회
제41조(조세 감면 등) ①
<u> 대한체육회</u>
② 대한체육회
<u> </u>
③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준하여 면제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 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u>통합체육회</u>, 대한장애인체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u>체육회, 장애인체육</u> <u>회</u>,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 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 독한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u>체육회, 장애인체육회</u>, 진 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장
<u>애인체육회</u>
대한체
육회, 시·도체육회
<u>.</u>
제43조(감독) <u>대한체육회, 장애인</u>
체육회
<u>.</u>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u>8 11 E 71 4 91</u>
<b>.</b>

(2) (생 댝)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회
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u>특별시징</u>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
<u>도지사</u> 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
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시 • 도지
<u> </u>